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명칭)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의 기숙사 명칭은 「수재학사」로 하고, 이 규정은 「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」(이하 '수재학사 운영 규정')이라 한다.
- 제2조(목적) 학생들에게 면학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기 주도적이고 규칙적인 공동생활을 통해 학생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향상시키며 학생들을 근면 성실하고 창의적인에너지 분야의 마이스터로 육성한다.
- 제3조(운영기간) 학칙에 따라 규정된 수업기간에 따라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

## 제2장 조직

제4조(구성) 수재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조직을 둔다.

- ① 교직원 대표, 학부모 대표 및 학생 대표로 구성된 「수재학사 운영위원회」(이하 '운영위원회')를 설치하여 수재학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.
- 1. 운영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고 생활안전복지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 관하며, 업무 담당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전자결재 문서로 보관한다.
- 2.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생활안전복지부 기획교사, 수재학사 업무담당교사, 행정실 장, 수재학사 담당 주무관, 사감(1명), 학부모대표(1명), 학생대표(남녀 각 1명) 으로 구성한다. (단, 학부모대표 및 학생대표는 중대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 여 참여한다.)
- ② 학생들이 규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공동체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재학 사 학생자치회(이하'학생자치회')를 둔다.
- 1. 학생자치회는 자치회장 2명(남 1/여 1), 각 학년대표 6명(남 3/ 여 3), 3학년 위 원 2명으로(총 10인) 구성한다.
- 2. 자치회장과 각 학년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며, 3학년 위원(2명)은 사 감 추천에 의해 선발한다.
- 3. 교칙을 위반한 학생자치회 위원에 대하여 학교 차원의 교육적 처분과 더불어 학생자치회 임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.

#### 제5조(기능)

- ① 수재학사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, 의결한다.
- 1.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- 2. 기숙사비 및 예 · 결산에 관한 사항
- 3. 입사 및 퇴사 전반에 관한 사항
- 4. 운영규정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- 5. 기숙사의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는 사항
- ② 수재학사 학생자치회는 필요시 수시로 모임을 갖고 수재학사 운영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규정 제·개정, 생활 프로그램 개설·변경 시 의견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.

제6조(회의) 수재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.

- ① 수재학사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,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다.
- ③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,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사감) 학교장은 원활한 기숙사 운영을 위하여 사감 3명을 임명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- ① 기숙사의 개관 및 휴관과 관련된 각종 업무
- ② 학생의 입·퇴사를 위한 행정 처리(외출과 외박 포함)
- ③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
- ④ 학생의 호실 배정 및 비상연락망 파악
- ⑤ 학생들의 상점과 벌점 관리
- ⑥ 규칙적인 생활을 위한 점호 및 야간 취침지도
- ⑦ 기숙사 내에서의 생활지도 및 순회지도
- ⑧ 기숙사 일지 작성 등 기숙사 운영과 관련된 공문 처리
- ⑨ 기숙사 화재 대피 훈련과 관련된 업무
- ⑩ 소방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와 비상구 개폐 작동 점검
- ① 기숙사 위생지도 및 환경관리 : 대청소 계획 수립 및 지도 등
- ② 외부인 출입 통제(방문자 인적사항 및 용건 기록, 방문 목적 이외의 행위 제한)
- ③ 기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

- 제8조(사감의 유의사항 등) 사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임의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.
  - ① 학생 간에 발생한 학교폭력(신체폭력, 언어폭력, 금품갈취, 강요, 따돌림, 성폭력, 사이버폭력)
  - ② 기숙사 내에서의 음주
  - ③ 기숙사 내에서의 도난 사건
  - ④ 학생의 입사 또는 퇴사에 대한 결정
  - ⑤ 학생의 자율 시간과 취침 시간에 대한 조정
  - ⑥ 학교장 허락 없이 사생의 보호자 소환
  - ⑦ 학생을 개인적으로 심부름시키는 일
  - ⑧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의 금품수수
  - ⑨ 기타 사회 통념상 사감의 직무로 볼 수 없는 행위 등

## 제3장 입사 및 퇴사

제9조(입사 대상 및 선정 기준)

- ① 본교 입학생 중 지방 중학교 출신의 신입생을 입사대상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입사할 수 있다.
- 1. 입학 이후 지방으로 거주지를 이전함에 따라 통학에 불편을 겪는 자 (가족 전체 구성원의 주소지 이전 사실 공문서 확인 필요)
- 2. 가정환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수재학사 입사를 필요로 하는 자 (관련 증 방서류 확인 필요)
- 3. 운영위원회에서 입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
- 제10조(입사인원) 수재학사의 입사 정원은 200명이며, 입사 정원대비 충원율 90%를 기준으로 운영한다. 단, 수재학사 운영위원회를 통해 충원율을 10%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 있다.
- 제11조(입사 자격의 제한)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기숙사의 입사 자격을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.
  - ① 감염성 질환 또는 정신 질환으로 다른 학생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자
  - ② 본 규정에 따라 명령퇴사 처분을 받은 자
  - ③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입사 제한을 결정한 자

제12조(입사 절차) 수재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- ① 입사희망자는 학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며,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입사가 결정된 학생은 지정된 기한 내에 지역보건소에서 결핵 등 감염성 질환에 관한 진단을 받아 확인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 기숙사 생활 안내와 호실을 배정받는다.

## 제13조(퇴사)

- ① 퇴사는 영구퇴사와 임시퇴사로 구분되며, 임시퇴사는 자진퇴사와 명령퇴사로 구분하다.
- ② 영구퇴사는 취업, 징계 등의 퇴사 사유 발생시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, 재입사할 수 없다.
- ③ 임시퇴사는 해당 사유에 따라 일정기간 퇴사하며, 이후 재입사할 수 있다.
- ④ 자진퇴사는 제14조에 의하여 입사자 개인의 의지로 퇴사하는 것을 말한다.
- ⑤ 명령퇴사는 운영위원회가 수재학사 질서 유지를 위해 제15조에 의거하여 결정한 퇴사를 말한다.
- 1. 명령퇴사의 경우에도 학생 및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

## 제14조(자진퇴사)

- ① 자진퇴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.
- 1. 전학, 유학, 휴학, 제적을 이유로 퇴사를 원하는 자
- 2. 건강상의 이유로 공동생활을 할 수 없어 가정요양 혹은 격리가 필요한 자
- 3. 체험학습을 신청한 자
- 4. 가족 및 친척의 경조사가 있는 자
- 5. 학교폭력 등의 사안과 관련되어 분리조치가 필요한 자
- 6. 기타 학교가 퇴사를 인정하는 자
- ② 자진퇴사는 가급적 퇴사 희망일 일주일 이전에 퇴사신청서와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다음, 해당 증빙서류를 사감에게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퇴사한다.

#### 제15조(명령퇴사)

- ① 수재학사 운영위원회는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이 명령퇴사 조치를 할 수 있다. 단 1호와 2호는 생활교육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.
- 1. 1주간 명령퇴사
  - 1) 수재학사 생활평점제에 따른 누적 벌점 40점 이상이 된 자 (명령퇴사 조치 후 벌점 40점 소멸)

- 2) 무단외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연락이 두절된 자
- 3) 무단외박을 한 자
- 4) 기타 동등 수준의 과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
- 2. 2주가 명령퇴사
  - 1) 음주, 흡연, 환각제 및 향정신성 약물 복용 (소지자는 1주간 명령퇴사와 함께 특별교육 실시)
  - 2) 상습적 절도 및 금품 갈취
- 3. 2~4주간 명령퇴사
  - 1) 학교폭력 행위(학교폭력예방법 참조)
  - 2) 교권침해 행위(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참조)
  - 3) 수재학사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자
  - 4) 불법행위로 법원 등 공공기관의 보호관찰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
- 4. 각호의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중대사안 발생 시 또는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이 결정된 경우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1~4주 간 명령퇴사 조치한다.
- ② 명령퇴사 누적 기간이 5주를 초과한 자는 영구퇴사에 처한다.
- 제16조(퇴사 절차) 퇴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.
  - ① 학생은 호실을 깨끗이 청소한 후, 점검을 받는다.
  - ② 손실 및 망실 물품을 확인하고 손·망실 확인 시 이에 대해 정산한다.
  - ③ 행정실에 방문하여 기숙사비, 식비 등을 정산한다.
  - ④ 공용물품을 반납하고, 개인물품을 정리하여 퇴사한다.

## 제4장 입사학생 관리

- 제17조(점호) 점호는 학생들의 인원과 건강 유무 및 시설의 안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- ① 야간 점호 이후 외출은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- ② 학생들에게 위압감이나 공포감을 줄 수 있는 방식의 점호는 지양한다.
  - ③ 학생은 점호 시 점호자의 지시나 요구 등에 따른다.
  - ④ 시험기간, 주말 등 상황에 따라 약식으로 점호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18조(사고 예방) 사감 등 기숙사 관리 관계자는 학생과 관련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을 따른다.

- ① 학생의 기숙사 출입과 외출 및 외박 관리를 위하여 정해진 양식으로 내용을 정리한다.
- ② 외부인의 기숙사 출입은 사전에 학교와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.
- ③ 점호시간을 준수하되, 부득이 하거나 약식점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호실 대표로 하여금 점호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다.
- ④ 사감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.
- ⑤ 학생들의 생활상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의함을 설치 운영한다.
- ⑥ 학생들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
- ⑦ 학생이 개인적으로 전기용품을 사용하도록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입사학생의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전기용품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한다.
- ⑧ 기숙사의 방화기구 및 비상구는 수시로 확인한다.
- ⑨ 학생 간 폭력 발생을 미리 인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에 알려야 한다.
- ⑩ 기숙사 내외의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한다.
- ① 시설물 점검 결과 조금이라도 학생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면 즉시 학교장, 기숙사 관리 관계자 및 학생들에게 알리고 해당 시설에 대한 접근을 통제한다.
- ② 학생과 사감 간의 연락 체제를 구축하고, 학생들에게 안내 및 홍보해야 한다.
- ③ 입사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각 호실별로 해충이나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의 유무 등을 점검한다.(입사학생들의 사전 양해 구할 것)
- ④ 사감실에는 비상약과 주변의 응급 의료원 및 관련 경찰서와 소방서의 연락망을 비치하여야 한다.
- ⑤ 사감실에 음주 흡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비치하고 필요시 사용한다.
- 제19조(사고 조치) 사감 등 기숙사 관리 관계자는 입사학생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다음에 따른다.
  - ① 사고 발생 시 환자 유무 확인 및 환자 응급처치를 최우선적으로 한다.
  - ② 다만, 환자의 상태가 심한 출혈, 탈골, 골절 등 위험할 경우, 응급처치 전문 능력이 없을 경우 함부로 환자를 일으켜 세우거나 움직이게 해서는 아니 되고 인근의의료 기관이나 119에 도움을 요청한다.
  - ③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경우 사감 또는 기숙사 관리 관계자 등 보호자가 동행하며, 현장 수습 및 나머지 입사학생 관리도 빈틈없이 한다.
  - ④ 다만, 사안이 큰 경우에는 학교장 또는 수사기관의 현장 정리 요청이 있기 전에 는 현장을 정리하지 말고 보존하여야 한다.
  - ⑤ 사회적 통념상 경미한 사고(단순 찰과상 등)를 제외한 사고는 발생 즉시 학교장 과 해당 보호자에게 알린다.

- ⑥ 거액 또는 고가의 물건 도난사고 시 학교장 및 위원장 등 관계자에게 보고한 후 함께 조치 방법을 결정한다.
- ⑦ 학생 간에 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,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 맡겨야 한다.
- ⑧ 안전사고에 따른 치료비는 학교 차원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청한다.

# 제5장 수재학사 생활 수칙

- 제20조(일반적 사항) 수재학사는 공동생활 장소이므로 입사학생은 타인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며, 질서를 유지하고,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  - ① 타인의 생활을 존중하고 배려한다.
  - 1. 개인의 취미 활동이나 건강관리 차원의 활동이 타인의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.
  - 2. 몸을 청결히 하고, 개인의 의류 등에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
  - 3. 독서실 이용 등 취침시간 이후 활동시 잠든 학생들을 배려하여 행동한다.
  - 4. 개인적으로 애완동물을 키워서는 안 된다.
  - ② 공동 생활을 위하여 기초질서를 유지한다.
  - 1. 공공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다.
  - 2. 전기와 물 등 공공재를 절약한다.
  - 3. 창문 밖으로 쓰레기, 음식물 등 이물질을 던지지 않는다.(창문 유격 등 임의 조작 금지)
  - 4. 등교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한 퇴실 시 냉난방 상태를 확인하여 정지시키고 최종 퇴실자가 소등한다.
  - 5. 변기에 휴지 등 이물질을 버리지 말고(비누, 칫솔, 과일 등 주의), 변기가 막히면 사감실에 준비된 압축 기구를 이용하여 해결한다.
  - 6. 호실의 공용물품을 수시로 확인하고 훼손 상태 발견 시 즉시 사감실에 신고한다.
  - 7. 기숙사 시설물을 임의로 변용하거나 보조물을 설치하지 않는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
  - 8. 비기숙사생을 동반하여 입사하지 않는다.
  - ③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.
  - 1. 학교폭력(신체폭력, 언어폭력, 금품갈취, 강요, 따돌림, 성폭력, 사이버폭력)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.
  - 2. 음주, 흡연, 약물 오남용을 하지 않는다. (소지 포함)
  - 3. 화투, 카드 등 사행성 도박 행위를 하지 않는다. (온라인 포함)

- ④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한다.
- 1. 호실 내에서는 전열기 및 화기 사용, 촛불 점등은 일절 금한다.
- 2. 성냥, 라이터, 초 등의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 등 위험한 물건을 반입하지 않는다.
- ⑤ 특정 질환이 있는 자, 특이체질자, 특정 약을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자 등은 미리사감에게 알린다.
- ⑥ 잡상인의 출입, 폭력 발생, 응급환자 발생, 기타 긴급 상황 등 학교 측에 알려야 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사감 등에게 알려야 한다.
- ⑦ 기숙사 출입 시에는 반드시 사감 등 기숙사 관리 관계자에게 신고한다.
- ⑧ 비상 상황 발생 시, 사감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.
- ⑨ 현금 등 귀중품을 호실 내에 방치하지 않는다.
- ⑩ 사감의 지도를 존중한다.
- ① 기타 건전한 기숙사 생활문화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한다.

### 제21조(자기주도학습)

- ① 자기주도학습은 호실 및 독서실에서 실시한다.
- ② 독서실에서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③ 독서실의 운영시간은 01시까지이며, 단 시험기간 등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운영시간을 연장 혹은 단축할 수 있다.

### 제22조(출입통제)

- ① 수재학사 및 호실은 외부인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, 학생의 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학교가 정한 일과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만 개방한다.
- ② 수재학사 개방은 출입문이 개방된 시간이라도 호실 출입은 제한될 수 있다.
- ③ 개방 시간 외에 호실 출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감실에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.
- ④ 수재학사 및 호실의 개방은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.

#### 제23조(외출)

- ① 외출은 당일 복귀를 전제로 한 학교 밖으로의 출타를 말한다.
- ② 외출 시에는 기숙사 사감실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③ 외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.
- 1. 직계가족 경조사
- 2.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하여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
- 3. 개인의 자격검정 또는 학교를 대표하여 교내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

- 4. 학습이나 봉사활동을 위한 경우
- 5. 기타 외출이 필요하다고 사감이 판단한 경우

### 제24조(외박)

- ① 외박은 1박 이상 체류를 전제로 한 기숙사 밖에서의 숙박을 말하며, 선택외박과 의무퇴사로 나눈다.
- ② 선택외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학교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은 다음, 사 감실에서 보호자와의 유선 확인 절차를 거쳐 허용한다.
- 1. 직계가족 및 친인척 경조사
- 2.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하여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
- 3. 기타 학교가 허용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③ 의무퇴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.
- 1. 학교에서 정한 횟수에 따라(매달 0~2회) 기숙사 환경정비와 개인정비를 위하여 의무퇴사를 실시한다.
- 2. 의무퇴사 후 입사는 해당 주 일요일 20:00까지 완료한다.
- 3. 정당한 입사지연 사유가 있을 시 사감에게 보고하고 허락받아야 한다.

제25조(면회) 면회는 사감실에서 신청한 후,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해진 장소에서 실시한다. 단, 호실에서의 면회는 금한다.

## 제6장 수재학사 생활평점제 운영

제26조(목적) 기숙사의 질서 유지, 입사학생의 민주시민의식 함양, 준법정신 제고, 안 정된 공간조성을 위하여 생활평점제를 운영한다.

제27조(적용 근거 등) 본 규정은 초·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호, 학교 교칙에 따른다.

### 제28조(상벌 기준의 원칙)

- ① 입사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상벌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입사학생의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다.
- ③ 입사학생들의 준법정신, 질서의식, 봉사정신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.
- ④ 입사학생의 선도는 해당 학생과 타 학생의 입장을 참작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이 있도록 한다.

- ⑤ 공정한 생활평점제 운영을 위하여 입사학생자치회 의견수렴 절차를 둔다.
- ⑥ 상벌점 항목 내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 수시 점검 및 학생의견 수렴한다.
- ⑦ 벌점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여 일관적으로 적용한다.
- ⑧ 상벌점 적용 내용을 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 생활평점제가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.

## 제29조(상벌점운영)

- ① 상벌점 항목 및 기준은 "<별표 1> <별표 2> 상 벌점 기준"과 같다.
- ② 상벌점 부과자는 사감으로 한다.
- ③ 상벌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한다.
- 1. 상점으로 벌점을 상쇄할 수 없다.
- 2. 벌점은 최종 벌점일로부터 30일 동안 벌점 없이 생활한 경우 최대 10점까지 자동 소멸된다.
- ④ 개인별 상벌점 기록은 학교 및 학부모에게 통지할 수 있다.
- ⑤ 학기별로 상점과 벌점을 종합하여 우수 학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.
- ⑥ 누적 벌점에 따라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다.
- 제30조(이의신청) 벌점에 대한 이의제기는 벌점부과 후 2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, 다음 의 절차에 따른다.
  - ① <별표 3>의 이의제기 신청서 제출(학생 또는 학부모)
  - ② 사감, 기숙사 관리 관계자의 협의 후 승인
  - ③ 승인결과 통보 및 기록수정

## 제7장 규정의 개정

#### 제31조(규정의 개정)

- ① 운영위원회 또는 학생자치회의 발의에 따라 규정을 제·개정 할 수 있다.
- ② 규정의 제·개정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.

#### - 부 칙 -

1. 본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수도전기공업고-4530(2024.04.02.))

- 2.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- 3. 제15조, 제18조의 변경사항은 202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
- 4. 제15조 1항 2호 변경사항은 2024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